

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| 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| 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재학생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교육대학교 - 연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연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하여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마음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공조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다.

1.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(상담, 특강, 워크숍 등)의 전문가(강사) 및 자문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한다.
 2. 재학생 상담 지원체제 확대를 위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대상자 연계에 적극 협조한다.
 3.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 상담 개입을 위한 정신건강 의료 자문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.
 4.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.
 5.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- 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| 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| Since 1946 |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제4조(비밀유지)

협약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 간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. 다만,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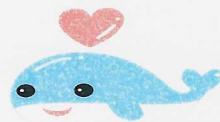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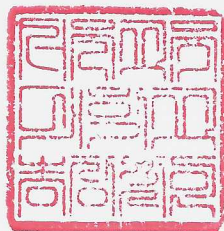
양 기관은 위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,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8월 13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장 신 호



연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
원장 최 동 렬

